



보도자료

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배포 일시 | 2022. 5. 11.(수) |
| 담당 부서 | 등록관리과 | 책임자 | 과장 황선우(044-202-543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보욱(044-202-5438) |

“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된다”

- 국가보훈처, 국가유공자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본격 시행 -

- ▶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일부 개정안과 동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
- ▶ 둘째손가락 상실(2마디→1마디), 한 눈의 시력장애(0.06→0.1, 교정시력) 등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

-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 있어 기존에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해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,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7급 판정을 받게 된다.
- 국가보훈처는 11일 “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·신설하는 내용의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(월), 동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(11일, 수)부터 시행에 들어갔다” 라고 밝혔다.

| 관련 법률 | 상이 부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(’22. 5. 9. 공포·시행) | 시력 장애 | 일부 개정 |
| | 발가락 상실 | 일부 개정 및 신설 |
|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(’22. 5. 11. 공포·시행) | 손가락 상실 | 일부 개정 |
| | 난관 및 난소 상실 | 신설 |

- 이는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,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 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,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

7급 판정을 받았지만, ‘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’ 로 개선했다.

- 또한,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‘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’ 로 기준을 완화했으며,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.

* 발가락 : 한쪽 발 3개 이상(2마디 이상 상실), 한쪽 발 4개 이상(1마디 이상 상실), 양쪽 발 4개 이상(2마디 이상 상실), 양쪽 발 6개 이상(1마디 이상 상실) 2마디 이상 상실 기준의 경우, 엄지발가락은 1마디 이상으로 적용

- 아울러, 한 눈의 교정시력이 기존 0.06이하에서 ‘0.1 이하’ 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, ‘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’ 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-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, 손가락 상실과 난관·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.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(월 36만5천원~52만1천원), 교육지원,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□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“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함”이라며 “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(복합부위통증증후군, CRPS) 및 정신장애(외상후스트레스장애, PTSD)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. 특히,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 <끝>

□ 국가유공자법 시행령(2022. 5. 9. 공포·시행)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|--|--|
| 7급 | 한 눈의 교정시력 <u>0.06 이하</u> | 한 눈의 교정시력 <u>0.1이하</u> |
| | 한 발의 <u>4개 이상</u> 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에서 상실 * 엄지는 1마디 이상 | 한 발의 <u>3개 이상</u> 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* 엄지는 1마디 이상 |
| | < 신 설 > | 한 발 <u>4개 이상</u> 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|
| | < 신 설 > | 양쪽 발가락 중 <u>4개 이상</u> 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 * 엄지는 1마디 이상 |
| | < 신 설 > | 양쪽 발가락 중 <u>6개 이상</u> 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 상실 |

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(2022. 5. 11. 공포·시행)

| 구 분 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7급 | 둘째손가락 <u>2마디 이상</u> 상실 | 둘째손가락 <u>1마디 이상</u> 상실 |
| | < 신 설 > | 한쪽 난관 또는 한쪽 난소 상실 |